

일반조건

(발효일자 27.02.2023)

1. 일반자료

1.1. 본 일반조건은 이하 CDEK Europe GmbH (이하 계약자라 한다)의 서비스제공절차를 규율한다.

1.2. 계약자는 제3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 대한 고객선적물품(서면통신, 소포 기타 문서상 및 비-문서상 콘텐츠)의 인도를 위한 물류솔루션 조성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서비스에는 고객의 재량에 따라, 제3자에 의한 내국 및/또는 국가간 인도의 조직과 이행, 창고에서의 선적물품 출고, 선적물품 보관, 통관형식과 절차, 인도 시대금수령, 수취인에 대한 통지 및 신원확인이 포함될 수 있다.

1.3. 본 일반조건은 공개적 제안이며, 오더/인도지시서를 통해 계약자서비스 수락을 확인하게 된다. 수락은 고객이 본 일반조건(공개제안)을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1.4. 고객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 일반조건 현행버전이 그 계약의 의무적 부록이 되어야 하고, 이는 웹사이트 cdek.kr (국가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으며, 계약자사무소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1.5. 계약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리스트와 그 제공조건은 본 조건의 부록 제2호 및/또는 계약자 웹사이트에 나와 있다.

2. 서비스요금

2.1. 계약자가 서면양식의 계약서로 다른 서비스비용을 정하지 않는 한, 계약자는 계약자 웹사이트상의 “비용계산” 난에서 계산가능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약자 공식 웹사이트에 표시된 서비스요금은 개략적인 것이고 그 성격상 자료/참조용 일 뿐이며, 제안에는 영향이 없다. 웹사이트상 계산되는 서비스요금은 통관, 조세, 수출관세, 통관요금, 세금, 현지조세, 요금과 세금을 제외한 것이다.

2.2. 고객이 지불할 서비스비용 총액은 인도준비를 위해 선적물품이 계약자에게 전달된 때에 그 선적물품의 물리적 또는 용적측정 중량의 정확한 수치를 기준으로 특정선적물품에 대해 결정된다.

2.3. 계약자는 물리적, 또는 용적측정 중량의 최고치를 기준으로 선적물품 인도서비스비용을 계산한다. 중량은 반올림한다. 용적측정중량은 길이(cm) x 넓이(cm) x 높이(cm) / 5000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계약자는 자신의 사무소에 있는 특별장비로 선적물품의 중량이나 용적을 다시 계산해서 고객이 신청서 및/또는 인도지시서에 기재한 선적물품의 중량 및/또는 용적관련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산한 인도비용의 정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4. 인도방식이 ‘도어까지’에서 ‘창고까지’로 변경되거나 서비스유형이 선적물품인도 수락 후 고객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그 인도비용은 감액방향으로 수정될 수 없다.

3. 서비스 시기

3.1. 기한은 근무일로 계산하며, 주말, 휴일, 통관에 필요한 날짜, 현지보안요건, 계약자와 당국에 의한 선적내용물 검사, 기타 계약자통제범위 밖의 사건으로 인한 지연은 포함되지 않는다.

3.2. 인도기간은 선적물품 수령일자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선적물품 수령일은 인도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당사자들은 인도기간이 매스컴에서 발표하는 불리한 기상여건, 휴일, 특별사건이나 상황에 의해 증가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3.3. 고객이 선적물품의 목재 크레이트 추가포장을 지시하는 경우, 그 인도기간은 하루가 연장된다.

3.4. 계약자는 본 조를 통해 12월에는 고객과의 추가약정 없이도 인도기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3.5. 본 조건 제3조가 규정하는 사유로 인한 인도기간변경은 계약자에 의한 지연이 되지 않는다.

4. 인도추적

인도상황은 CDEK의 공식 웹사이트인 cdek.kr 에서 추적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계약자가 선적물품 인도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5. 오더조건 변경

5.1. 선적물품 인도주소 변경은 고객이나 선적물품수취인의 요청으로 가능하다. 선적물품은, 아래에 대한 추가약정을 전제로, 오더발주 당시 기재된 주소가 아닌 수취인의 다른 주소로 인도될 수 있다.

- 동일한 도시내 인도의 경우 - 새 주소로의 인도기간
- 도시외부 인도의 경우 - 새 주소로의 인도기간과 비용

5.2. 수취인 및/또는 그 연락처 전화번호에 관한 고객의 오더조건변경은 고객과 계약자와의 직접 자동대화방식을 통하거나(통합, 개인계정 등) 신원확인문서원본과 신청서를 계약자사무소/ 오더발급점에 제출해서 해야 한다.

6. 기타 조건

6.1. 인도절차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계약자는 내용물을 검사해서 위험하거나 본 일반조건 및/또는 관련법률요건상 선적금지대상물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6.2. 고객에게서 선적물품을 인수할 때 계약자는 이를 검사할 수 있도록 인도/전달용으로 제출된 선적물품의 내용물을 제시할 것을 고객/발송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은 계약자가 검사할 수 있도록 선적물품상 내용물을 제시해야 하고, 계약자 임석 하에 스스로 그 선적물품을 개봉해야 한다.

6.3. 고객이 계약자가 검사할 선적물품 내용물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자는 그 선적물품 인도주선을 거절할 수 있다.

6.4. 고객은 계약자나 법률상 권한 있는 자가 선적물품 인도 도중 언제든지 고객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선적내용물을 개봉해서 검사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6.5. 인도주선용 선적물품의 인수 후에 이를 개봉해서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의 조치는 계약자의 권한 있는 근로자의 임석 하에 이행되어야 한다.

6.6. 인도용 선적물품의 인수 후에 이를 개봉해서 검사하는 경우, 선적물품의 외관, 중량 및 그 내용물에서

발견된 물건을 기재한 계약자제시양식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확인서에는 또한 그 내용물검사결과와 그 선적물품 봉인에 사용한 보안 스티커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6.7. 그 내용물에서 위험하거나 본 일반조건이나 법률상 인도가 허용되지 않은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선적물품상 내용물은 고객에게 반송되어야 한다. 고객에 대한 선적물품 반송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되 내용물 반품 전에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 위험하거나 금지된 내용물을 계약자가 반송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계약자의 통지(전화나 전자통신을 통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그 내용물을 계약자창고에서 픽업해야 한다. 고객이 그 선적물품 픽업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그 선적물품의 보관이나 고객으로의 반송 책임에서 면제된다.

6.8. 고객은 계약자의 재산이나 직원 또는 주위환경에 유해할 수 있는 성격의 선적물품 관련자료를 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계약자는 발송할 선적물품의 인도성격을 확인하는 추가문서(라이선스, 인증서, 기록, 등)를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다.

6.9. 계약자는 고객이 제출한 자료나 문서의 정확성, 진실성 및 그것이 충분한지 여부를 점검할 의무가 없다.

6.10. 고객은 선적물품 수령/인도 주소(장소)에 대한 자유로운 출입(차단구역 포함, 적절한 허가증/패스/확인서제공 등)을 보장해야 한다.

6.11. cdek.kr (국가 웹사이트)에서 일반제안서에 응함으로써 1회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약자사무소에서 현금으로(지불단말기를 이용한 현금 등) 계약자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하는 경우에는 고객을 대리할 자격에 관한 적절한 증거문서를 계약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고객의 대리인이 위에 기재된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자는 인도지시서에 발송인으로 기재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대금도 그 개인에게서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6.12. 계약자는 수락 없이 일방적으로,

1) 아래의 경우 서비스제공을 거절할 수 있고,

- 고객이 정상적인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자료 및/또는 문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선적물품 인수 시 계약자근로자가 검사를 위해 이를 개봉하는 것을 고객이 거부하는 경우,
- 그 선적물품에 본 조건이나 법률상 인도할 수 없는 내용물이 들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거나, 인도를 위해 계약자의 추가승인이 필요하나 그 승인이 없는 경우
- 고객이 신원확인 및/또는 자격확인(법인에 대한) 문서가 없는 경우
- 선적물품이 부록 1을 충족하지 못한 포장상태의 것이고 고객이 추가보장을 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
- 고객이 픽업장소 인도방식을 선택했으나 그 선적물품의 용적/중량이 그 픽업장소의 용적/중량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선적물품이 인도용으로 인수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인도방식을 변경하고 이를 고객에 통지해서 다른 픽업장소로 인도할 수 있다.

2) 적절한 다른 인도방식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으며,

3) 본 일반조건, 서비스대금, 서비스조건 및 지불절차와 조건을 수정할 수 있다. 계약자는 그 변경이 효력을 갖게 되는 날의 10일 전에 해당변경을 계약자 공식 웹사이트인 cdek.kr (국가 웹사이트)에 공표해야 한다. 고객은 계약자 공식 웹사이트상의 변경이 계약자가 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는 것과 이를 적시에 읽고 수락했음을 확인해야 한다. 고객은 독자적으로 위 변경을 체크할

책임이 있다.

4) 인도주선 중 계약자가 그 포장이 본 일반조건 부록 제1호상 요건에 따른 내용물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의 것임을 발견한 경우, 계약자는 고객과 그 선적물품의 적절한 포장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그 선적물품의 인도를 중지할 수 있다.

6.13. 계약자의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고객이 아래 개인정보를 계약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고객의 개인정보, 선적물품수령인의 개인정보, 그들의 각 대리인의 개인정보. 고객은 또한 자신이 그 개인정보대상자로부터 그 개인정보를 자동화되거나 자동화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 보관, 전달(본 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해 계약자가 고용한 제3자에 대한 전달 포함), 폐기 및 처리하는 데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을 보장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3년간 전달되어야 한다.

6.14. 계약자의 요청이 있으면 고객은 자신의 근로자/대리인 및 선적물품수령인의 개인정보 이용과 처리에 대한 승인을 해야 한다. 권한 있는 자에 대한 선적물품 출고에 관한 고객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그 수령인은 선적물품 출고 시 인도지시서에 자신의 신원확인문서 세부사항을 기입해야 한다. 인도주선을 위한 선적물품을 계약자에게 제공할 때에, 고객은 인도지시서에 여권정보를 기입해야 한다는 것을 그 수령인에게 통지할 책임을 져야 한다.

6.15. 오더에 관한 고객의 메모는 자료목적 만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고객이 온라인 샵에서 “개봉 및 내용물검사 금지” 추가서비스 기준으로 발주한 오더는 제외하고), 계약자의 추가서비스 제공근거가 될 수 없으며, 계약자에게 불이행책임을 지우는 근거가 될 수 없다.

7. 선적물품 수락 절차

7.1. 인도서비스는 고객의 인도지시서 발급과 각 선적물품에 대한 바코드라벨 신청을 전제로 제공된다. 인도용 선적물품이 인수되면 인도지시서 한 부가 고객에게 발급되고 다른 한 부는 계약자가 보관한다.

7.2. 인도지시서에는 고객과 계약자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 인도지시서에 대한 서명을 통해 고객은 계약내역(주소, 전화번호, 명칭 및 발송인/수령인 명칭)과 선적물품에 관한 자료: 명칭, 중량, 용적, 명세, 현금지불인도, 신고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자대리인은 인도지시서에 서명함으로써 선적물품 수령을 확인해야 한다.

7.3. 고유번호가 붙은 계약자의 포장자재가 사용된 경우, 발송인은 인도지시서 상의 “포장번호” 란에 이를 기입해야 한다.

7.4. 계약자는 선적물품을 그 내용물 점검이나 계산 없이 그 품목 수에 따라 인수해야 한다. 계약자는 당사자들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내부내용물을 다시 계산해서 선적물품인도를 수락해서는 안 된다.

7.5. 고객은 필요한 경우 스스로 첨부문서(재고, 인보이스, 통관용 첨부문서, 등)에 기입해야 한다.

7.6.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기술안내서,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위험물품규정, 국제해운 위험물품규범, 도로를 통한 국가간 위험물품운송에 관한 유럽협약, 기타 위험한 물품의 운송에 적용되는 국가나 국제적 법률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내용물 등, 그 내용물이 위험한 것이거나 인도 및/또는 보관용으로 계약자에게

제공되는 금지대상품목 리스트에 있는 경우, 계약자는 그 선적물품의 인도를 수락해서는 안 된다.

7.7. 고객은 선적물품이 본 일반조건 부록 1에 따라 포장된 것임을 보장해야 한다. 그 선적물품이 포장되지 않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유료 추가포장을 고객에게 제안할 수 있다. 고객이 추가포장을 거절하면, 계약자는 부록 1을 충족하지 않는 포장상태인 선적물품의 인수를 거절해야 한다.

8. 특정유형의 고객에게 적용되는 추가조건

8.1. 개인의 품목은 그 개인이 제시하는 신분증원본을 근거로 그 품목을 인수하는 장소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인수해야 한다. 개인은 인도지시서에 신분증내역을 기입하고 서명해야 한다.

8.2. 법인으로부터의 선적물품인수는 그 개인의 권한(법인의 대리인)을 증명하는 문서와 그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을 근거로 선적물품을 인수하는 장소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법인으로부터의 선적물품 인수는 인도지시서에 신분증과 권한확인문서 내역이 기입되고, 대리인서명 후 그 권한확인문서의 사본을 작성한 후에만 해야 한다.

8.3. 법인인 고객이 그 대리인의 권한을 취소하면 이를 즉시 (그 사건 이튿날에)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 통지를 위해서는 계약자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객이 그 통지를 하지 않거나 기일 내에 하지 않으면 고객이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8.4. 온라인 샵에서 선적물품을 인수하는 것은 그 선적물품에 관한 문서와 자료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신고된 선적물품의 수와 실제 선적물품의 수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이 발견되거나, 선적물품의 손상이 발견되면, 당사자들은 확인서를 작성해서 문제가 된 선적물품의 수를 기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고객은 그 오더의 인도지시서에 필요한 추가서비스와 요구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8.5. 온라인 스톱은 인도용 선적물품을 준비할 때 선적비용을 신고하고 추가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9. 국가간 인도, 국경간 서비스제공 주선 시의 추가조건

9.1. (EU 내 선적을 제외한) 선적물품의 국가간 인도서비스에는 통관지원서비스가 포함된다. 고객은 계약자가 통관서비스 등 서비스이행을 위해 제3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9.2. 고객은 선적물품 내용물이 발송/수령국가에서나 그곳으로 수출/수입 되는 것이 금지된 상품목록에 들어 있지 않음을 독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고객은 발송/수령국가에서 또는 그곳으로 수출/수입이 금지된 선적물품을 계약자에게 인도해서는 안 된다.

9.3. 국가간 선적물품 인도의 경우 고객은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고 통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그 선적물품수령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수령인이 통관비용지불을 거절하면 그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9.4. 오더 발주를 통해 고객은 자신을 대신하는 통관대리인에 의한 통관절차진행을 계약자에게 지시하게 된다. 고객은 계약자가 통관절차진행을 위한 통관대리인 지정목적 만으로 명목상 수령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통관대리인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 그를 대신해서 통관지원서비스를 이행해야 한다.

9.5. 통관당국이 선적물품의 수입/수출 세관신고서에 기재된 자료를 확인하거나 통관절차진행에 대한 계약자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문서를 요구하는 경우, 고객은 요구된 문서를 자신의 경비부담으로 제출해야 한다.

9.6. 고객은 선적물품의 수출과 수입에 관한 진정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고객이 선적물품이나 그 내용물에 관해서 거짓이나 틀린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고객을 상대로 민사 클레임이 제기될 수 있고 고객이 행정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고객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고객은 제출된 자료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클레임과 그로 인해 계약자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계약자에게 배상하고 그에게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9.7. 통관 기타 공공당국의 조치로 인해, 또는 고객이 정확한 문서목록을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 통관대리인이 지출한 관세나 세금과, 필요한 인가나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고객에게 청구되어야 한다. 세관 기타 당국의 조치로 인해, 또는 고객이 필요한 자료나 정확한 문서리스트를 제출할 수 없거나 필요한 인가나 허가를 얻지 못해서 계약자가 지출하는 보관 기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고객은 관세와 통관요금 및 통관대리인이 청구한 관세와 요금을 수령인이 지불하지 않은 경우 통관대리인이 지출한 추가작업관리 기타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본 조가 지칭하는 경우에 있어 고객은 자신의 요금, 세금 및 경비를 스스로 지출해야 한다.

10. 선적물품 인도절차

10.1. 선적물품은 계약자의 수집지점에 인도되거나(이하 “창고인도”라 한다)고객이 인도지시서에 기재한 수령인주소로 인도되어야 한다(이하 “도어인도”라 한다).

10.2. 선적물품이 “도어인도”되는 경우,

- 그 선적물품은 인도지시서에 수령인으로 기재된 개인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인도주소에 있는 다른 자가 수령인의 오리지널 신원확인문서를 제시하고 실제로 그 선적물품을 인수하면 그 선적물품을 그 다른 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수령인 신원확인문서상의 세부내역과 인도주소에서 선적물품을 인수하는 자의 신원은 인도지시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 수령인인 법인에 대한 선적물품 인도는 그 법인의 근로자나 대리인에게 해야 한다. 회사를 대표하는 담당자자로 고객이 인도지시서에 기재한 자는 계약자로부터 선적물품을 수령하도록 허용된 유일한 사람이 아니다. 선적물품을 수령할 수령인대리인의 권한은 위임장, 그 수령인대리인이 인도지시서에 기재된 수령인주소에 있는 것, 및/또는 그 선적물품의 수령인자격으로 지정된 조직의 인감(또는 압인)을 이용할 수 있는 것, 및 수령인조직이 발급한 권한부여카드를 제시할 수 있는 것 등, 그 선적물품이 인도되는 상황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

10.3. 선적물품이 “창고인도” 되는 경우,

- 그 선적물품은 인도지시서에 수령인으로 기재된 개인이 신원확인문서를 제출하고 인도지시서에 신원확인문서 세부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면 그 개인에게만 인도되어야 한다.

- 법인인 수령인에게 인도되는 선적물품은 수입문서와 신원확인문서를 제출하고 인도지시서에 그 신원확인문서 내역을 기재한 후 서명한 그 법인의 근로자나 대리인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10.4. 자연인이나 법인에 대한 인도방법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 계약자는 위에 기재된 자료 외에도

인도지시서에 기재된 수령인의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수령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10.5. 선적물품은 PO 박스 주소나 우편번호만 적힌 주소로 인도될 수 없다.

10.6. 계약자에 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법률집행, 세금, 사법, 인가, 및 군사조직 등 모든 지부나 등급의 당국)에 대한 인도는 그 단체에서 통용되는 절차에 따라 인도보고증서 없이(특히 사무소에서 근로자의 서명 없이 그 품목을 전달하거나 입구의 메일박스에 놓아두는 등) 이행되어야 한다.

10.7. 계약자는 “창고인도” 방식의 선적물품 수령인에게 그 창고에 선적물품이 도착하는 날짜와 인도준비가 되었음을 통지해야 한다. 그 통지는 메신저나 SMS를 통해서 발송되어야 한다. 고객은 또한 계약자 웹사이트인 cdek.kr (CDEK Global의 웹사이트)에서 선적물품수령을 추적할 수 있다.

10.8. 선적물품이 인도되면, 그 수령인은 아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 수령인이나 그의 수임대리인의 신원확인문서 세부사항(성명, 다른 명칭(해당하는 경우), 문서 일련번호)
- 그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하는 위임장 기타 문서의 세부사항 (수령인을 대신하는 행위를 하는 수임대리인이 있는 경우)

10.9. 수령인은 계약자가 정한 표준양식의 인도지시서에 선적물품의 수령/인도/제공 및 개인정보처리에 이용되는 그 수령인이나 그의 수임대리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성격의 자료를 기입하거나, 계약자가 정한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위 정보를 기록해야 하며, 이는 수령인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을 보장한다. 선적물품의 인도는 선적물품인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확인을 위해 수령인(수령인의 수임대리인)의 서명이나 계약자가 정한 다른 방식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인도지시서에 표시된 수령인의 휴대전화번호로 SMS를 통해 발송된 확인코드를 이용한 수령인의 추가신원확인인 경우, 수령인이 표시한 확인코드가 인도지시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10.10. 온라인 샵의 고객에게서 선적물품이 인도되면, 인도지시서에 달리 기재된 것이 없는 한, 수령인은 그 대금/요금 지불 전에 계약자대리인의 임석 하에 그 선적물품을 개봉해서 그 내용물을 검사할 수 있다. 포장의 불량한 경우, 수령인은 인도 당시 그 내용물 검사에 계약자의 근로자를 참석하게 해서 계약자가 정한 양식의 쌍방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10.11. 수령인지불조건으로 인도된 선적물품에 대해 수령인이 지불을 거절하는 경우, 고객이 인도된 선적물품에 대한 지불을 해야 한다.

10.12. 서비스를 취소하는 경우, 고객은 선적물품의 예정된 수령/인도시각의 적어도 한시간 전에 전화, 전자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이를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1 선적물품의 보관 및 반환

11.1. 선적물품이 수령인에게 전달될 수 없는 경우, 계약자는 그 선적물품이 제3자의 보관시설에 무료로 7일간 보관되게 해야 한다. 그 7일 후 8일부터는 선적물품보관에 추가요금이 부과되고, 계약상 달리 정해진 것이

없으면 이는 고객이 계약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보관서비스비용은 선적물품의 크기에 따라 다르며, 일별로 청구된다.

11.2. 선적물품에 대해 한달 내에 인도요구가 없으면 수령인의 의사를 다시 확인한 후 이를 고객에게 반환해야 한다. 고객은 선적물품의 발송, 보관, 처분, 반환 및 재인도와 관련해서 지출된 비용을 계약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11.3. 계약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고객은 선적물품의 반환과 그에 대한 소유권을 서면으로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은 계약자에 대한 선적물품 보관 및 반송비용 배상책임에서 면제된다.

11.4. 국가간 특별송달서비스비용에는 통관지점에서의 3일간의 선적물품보관비용이 포함된다. 세관경계간 이동을 위한 통관에 아직 이송되지 않는 선적물품은 본 조건에 따라 창고에 보관되어야 한다.

11.5. 온라인 샵에 있는 고객의 선적물품은 아래의 경우 반송의 대상이 된다. 수령인이 그 선적물품을 거절한 경우, 보관기간(무료보관기간은 계약상 달리 정해지지 않은 한 14일임)이 만료한 경우, 또는 부분인도(부분환불)를 한 경우. 선적물품의 반송 기타 관련비용은 고객이 지불해야 한다.

11.6. 고객에게 반환되는 품목의 목록과 그 빈도는 계약자와 고객이 합의해야 한다.

11.7. 고객에게 반환될 선적물품 목록은 정해진 반환기간에 따라 계약상 정해진 이메일 주소로 고객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고객에게 반환되는 선적물품 목록에는 인도되지 않음, 반품됨, 인도됨, 부분인도, 및 보관기간이 만료된 선적물품, 등 계약자가 그 최종상태를 기입한 인도지시서 상의 선적물품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객은 연장된 보관기간에 대한 요금지불의무 하에, 계약상 정해진 기간 내에서, 그 소재지에서의 선적물품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8. 선적물품이 고객에게 반환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그 선적물품이나 선적물품 콘솔에 대한 인도지시서를 발급해야 한다. 반품은 오더리스트가 첨부된 구체적인 인도지시서에 따라서 해야 하고, 계약자는 아래의 것 중 하나의 방식과 아래 순서에 따라 반품을 해야 한다.

- 이 경우 고객은 선적물품/선적물품콘솔을 수령한 후 2일 이내에, 실제로 수령한 선적물품의 수량과 품질이 첨부된 인도지시서에 표시된 선적물품의 수량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차이가 있는 경우, 고객은 그 불일치확인서를 작성해서 그 불일치를 신속히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 불일치확인서는 최소한 세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고객은 인수과정이 비디오로 기록되게 해야 하고, 선적물품인수는 고객이 해야 한다. 고객은 그 선적물품/콘솔을 수령한 후 2일 이내에 위 불일치확인서를 첨부해서 이를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선적물품의 수량승인과 계약자의 클레임제기 목적상, 본 조가 규정하는 2일의 기간은 예방적인 것이다. 계약자의 요청이 있으면 고객은 선적물품의 수량 및/또는 품질의 불일치에 대한 비디오기록물을 제출해야 한다. 고객이 선적물품콘솔을 수령한 후 2일이 지나서 제출한 클레임은 고려될 수 없고 계약자에 의해 승인될 수 없다.

- 선적물품/각 배치를 계약자 소재지주소로 인도하는 것. 위의 경우, 해당인도지시서에 서명하고 선적물품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때에 수량과 품질에 관한 선적물품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11.9. 인도지시서 상 계산된 중량은 그 인도지시서에 따라 반품된 오더 중량을 합산한 것이다.

11.10. 오더가 부분 인도된 것인 경우, 반품용으로 추산된 중량은 그 오더의 원래 중량이어야 한다.

12. 당사자들의 책임

12.1. 계약자의 책임

12.1.1. 계약자는 고객이 수령인에게 판매한 상품대금의 지연된 송금에 대한 위약금으로 각 지연일에 대해 그 상품대금총액의 0.2%를 지불해야 하되, 총 지불채무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12.1.2. 계약자는 선적물품 인도지연에 대해 각 지연일자당 해당선적물품 인도서비스금액의 삼 퍼센트(3%) 해당금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되, 관련 인도지시서에 따른 선적물품인도서비스 가액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12.1.3. 그것에 대해 가치가 신고되고 신고가치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선적물품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금액은,

- 선적물품의 전량손실이나 전량손해의 경우 - 선적물품 인도에 대한 계약자의 서비스요금과 실제손해금액의 추가배상 금액으로서 _____을 초과하지 않는 것. 선적물품에 동봉된 문서가 신고가액이 없는 문서인 경우의 추가배상금액은 _____이다.
- 선적물품 일부손상이나 일부분실의 경우 - 선적물품 전부에 대한 계약자서비스요금에 대한 선적물품전부의 청구가능 총 중량 대비 손상/분실된 패키지 청구가능중량 비율의 값과 실제손실금액의 추가 배상으로서, _____을 초과하지 않는 것. 그 내용물이 문서인 경우, 추가배상은 _____이다.

그것에 대해 신고가액이 신고되고 신고가액 요금이 부과된 선적물품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금액은,

- 선적물품 전부손상이나 전부분실의 경우 - 해당선적물품에 포함된 내용물의 가치금액으로서, 인도지시서에 기재된 신고가액과 해당선적물품에 대한 인도서비스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것.
- 선적물품의 부분분실(부족)이나 부분손상의 경우 - 선적물품 전부에 대한 계약자의 서비스요금에 대한 선적물품전부의 청구가능 총 중량 대비 손상/분실된 패키지 청구가능중량 비율의 값과 분실되거나 손상된 물품의 감소가치 금액으로서, 인도지시서에 기재된 신고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것.

12.1.4. 계약자는 이익상실 기타 파생적 손실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 고객은 선적물품이 부록 1이 규정하는 계약자요건에 따라 포장되게 할 책임이 있다. 온라인 샵인 고객이 그 포장요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내용물손상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고, 고객이 “가치신고”/”보험”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금액은 고객에게 환불될 수 없다.

12.1.5. 온라인 샵인 고객이 신고가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낮게 신고한 경우, 또는 계약자에 대한 인도 후의 인도과정에서 신고가액을 변경한 경우, 계약자는 고객이 기재한 금액에 대한 책임이 있다.

12.1.6. 고객이 내용물, 인도조건, 인도지시서 상의 취급, 포장 및 보관에 관한 부정확한/불완전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또는 그 내용물이 공공당국에 의해 몰수된 경우, 계약자는 가능한 인도지연 및/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

12.1.7. 계약자는 고객, 수령인, 또는 계약자의 근로자가 아닌 제3자의 사기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

12.1.8. 계약자가 정해진 수령인에 대한 인도기한 만료일자부터 14일 이내에 선적물품을 찾지 못한 경우, 그 선적물품은 분실된 것으로 간주한다.

12.1.9. 손해, 손실, 또는 해당계약과 본 일반조건에 따른 의무의 이행지연이 계약자의 통제범위 밖의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 계약자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러한 사유에는 아래의 것 등이 포함된다.

- 자연재해, 즉 지진, 사이클론, 폭풍, 해일, 안개, 화재, 등
- 불가항력, 즉 군사행동, 항공기추락, 자동차충돌, 봉쇄조치, 전염병, 세계적 역병, 폭동이나 대규모의 무질서, 파업, 등
- 인도지시서 발급당시에 고객이 이를 계약자에게 통지했든 아니든, 선적물품의 성격/특성으로 인한 하자
- 계약자의 근로자나 도급업체가 아닌 자, 즉 고객, 수령인, 제3자(운송업체 포함), 공무원의 행위나 부작위
- 인도(발송)가 위험하거나 금지된 선적물품의 계약자에의 인도
- 전자 또는 사진 이미지, 데이터와 기록에 대한, 또는 이를 삭제하는 전기나 자기장에 의한 부작용
- 고객의 본 일반조건이 규정한 조건 불이행
- 선적물품이 모든 조건에 따라 인수 및 인도되었고 그 포장이나 봉인에 아무런 외부손상이 없는 것
- 특정온도체계준수 불이행, 규범상 누출, 중량이나 용적의 감소, 규범상 마모와 손상, 자연발화, 발효, 부패, 노후, 수축, 부식, 또는 선적물품 내용물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한 선적물품의 가치저하
- 수령인이 선적물품을 수령한 후의 그 (내용물 일부의) 분실이나 손상 발견
- 고객/수령인에 의한 선적물품수령 일자/주소 변경
- 선적물품 인도의무이행과 관계없이 고객에게 초래된 손상 (내용물의 부적절한 품질, 크기, 내용물 종류, 등)

12.2. 고객의 책임

12.2.1. 고객은 선적물품인도에 대한 요금 전액과 고객을 대신해서 계약자가 지출한 보관 기타 비용을 계약자에게 지불하거나 보상해야 하고, 고객이 본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모든 클레임, 손실, 벌금, 관세와 요금 기타 부담금을 배상해야 한다.

12.2.2. 선적물품의 가액이 신고된 경우, 인도 도중에 선적물품에 초래된 손상의 실체가액을 입증 및 확인하기 위해, 고객은 해당선적물품의 실체가액과 고객의 선적물품 소유권을 확인하는 문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적물품 손상의 경우, 고객은 그 수리비용을 확인하는 전문가의 의견 및/또는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2.2.3. 고객이 인도에 위험하거나 운송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내용물의 선적물품을 그에 관한 설명 없이 계약자에게 전달한 경우, 고객은 손해배상에 추가해서, 위험하거나 금지된 것으로 분류된 내용물의 각 선적물품에 대해 _____의 벌금을 계약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고객은 계약자의 지불요청 수령 후 5일 이내에 그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12.2.4. 인도된 고객의 선적물품에 대해 전자식지불수단을 통한 수령인으로부터의 대금수령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어떤 사유이든 계약자은행계좌에 선적물품수령인으로부터 아무 금액도 입금되지 않거나 인도된 선적물품에 대한 계약자은행계좌로의 은행송금업무가 어떤 사유로든 취소된 경우, 계약자는 인도된 고객선적물품에 대한 그 거래범위 내의 금액을 고객에게 송금할 수 없다.

12.2.5. 인도된 고객의 선적물품에 대한 계약자은행계좌로의 대금송금에 대한 은행업무 취소당시 계약자가 그 취소된 업무에 대한 자금을 고객의 계좌에 이미 송금한 경우, 위에 기재된 자금은 초과송금자금으로 간주된다. 계약자는 고객에게 초과 송금된 자금을 고객을 위해 지불된 모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취소된 은행거래금액을 상쇄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없으면, 계약자는 취소된 은행거래에 대한 금액을 환불할 것을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다. 고객은 위의 인보이스금액을 그 발행일부로부터 삼(3)일 이내에 지불해야 한다.

12.2.6. 고객은 필요한 모든 인가와 허가를 입수함으로써 선적물품에 관한 각종 수출입 인가나 허가요건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계약자는 고객의 수출관리법률, 봉쇄조치, 제한이나 금지조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

12.2.7. 고객은 무기 기타 전략물자, 특정개인이나 법인과 서비스 및 금융이나 상업거래, 또는 인도가 발생할 수 있는 국가로/에서/전역에서 선적될 수 있는 특정기술, 자료 및 물품의 부당한 거래의 금지와 그에 대한 조건부과 등, 제반 수출관리법령을 준수할 것을 본 조를 통해 보장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2.2.8. 고객은 수령인의 선적물품 인수거부, 수령인의 목적지국가에서의 세금, 관세 및 부담금 지불거부, 목적지국가로의 선적물품 수입불가, 수령인의 계약자와의 통신누락으로 인한 선적물품 인도불가와 같은 사유 등으로 인한 선적물품반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그 선적물품을 선적국가로 수입하는 경우의 계약자의 서비스요금, 관세, 세금 및 부담금 등 그 선적물품의 반품에 관한 비용을 각 청구서 수령 후 5일 이내에 지불해야 한다. 본 조가 규정한 사유로 선적물품이 반품되면, 계약자는 그 선적물품의 통관필요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 선적물품 반품통지서 수령 후 7일 이내에 고객은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통관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고객이 필요한 문서 제출과 관세납부 기한연장을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거나 7일의 기한 내에 각 선적물품을 위한 문서제출과 통관을 위한 관세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세관이 그 선적물품을 폐기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고객은 필요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문서제출과 관세납부 기한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의 세관의 선적물품 폐기절차에 본 조를 통해 동의한다. 세관의 선적물품 폐기절차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고객은 그 지출비용을 계약자로부터 해당요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지불할 책임이 있다.

12.2.9. 인도된 고객의 선적물품에 대해 수령인으로부터의 은행카드를 이용한 현금 아닌 자금의 수령 및/또는 수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은행카드 소유자, 지불시스템 및/또는 인행이 그 은행거래를 거부/부인하면, 계약자는 고객과 그 취소된 은행업무/거래를 결제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12.2.10. 각 인보이스상 취소된 계약자의 은행업무/거래 금액을 은행이 억류한 경우, 고객은 그 금액을 계약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계약자는 고객에게 지불된 금액에서 취소된 업무/거래금액을 공제할 수 있고, 그 금액이 거래금액에 충분하지 않으면 계약자는 고객을 상대로 누락된 거래금액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

12.2.11. 고객은 위에 기재된 청구서를 그 발급 후 삼(3)일 이내에 지불해야 한다.

12.2.12. 계약자는 청구서에 기재된 지불목적과 상관없이, 종전 청구일자의 확인서/인보이스 명세서에 대한 입금금액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13. 분쟁해결절차

13.1. 당사자들은 계약의 체결, 유효성, 이행 및 해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클레임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고객은 인도용 선적물품을 계약자에게 전달한 때부터, 또는 반품된 선적물품의 경우에는 반품인도지시서가 발급된 때부터 30일 이내에, 고객에 가장 인접한 계약자사무소에, 또는 전자식으로 cdek.kr 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13.2. 선적물품의 손상 및/또는 선적물품 일부품목의 분실에 관한 고객의 클레임의 경우, 그 클레임의 근거는 선적물품 인도 당시 계약자대리인 임석 하에 작성된 확인서여야 한다. 고객이 계약자의 인도시기나 선적물품 분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는다.

13.3. 계약자는 불만수령 후 10일 내에 그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한다. 보험회사, 법률집행이나 통관당국, 또는 고객 클레임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가진 자료부터 자료를 입수해야 하는 경우, 계약자는 클레임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3.4. 당사자들은 두 거주자들 _____ (독일)간 분쟁의 관할권이 국가법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본 조를 통해 합의한다.

13.5. 위반, 체결, 개정, 해지, 또는 유효성 등, 다른 국가 거주자들 간에 체결된 계약(국경간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 다툼, 또는 클레임은 중재조건상 조항에 따라 비영리자율기구인 “러시아근대중재협회”에서 러시아중재센터가 진행하는 중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은 클레임 가액이 국제상사중재목적상 오십만 (500,000) 미국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중재조건 제7장에 따른 긴급중재를 하기로 본 조를 통해 합의한다.

당사자들은 긴급중재절차상 구두변론은 하지 않는다는 데에 본 조를 통해 합의한다. 당사자들은 자발적으로 중재판정을 이행해야 한다.

14. 조항의 독립성

14.1. 본 조건상 어느 조항의 유효성과 집행력은 본 조건상 다른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줄 수 없다.

14.2. 고객과 계약자는 본 조건이 계약자가 제공하는 특정서비스(그것에 대해 추가대금이 지불되는 것 포함)에 관한 고객의 권리를 저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15. 용어풀이

고객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하는 자
수령인	선적물품 최종수령인
온라인 샵	웹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 오더를 수락하고, 구매자에게 지불옵션과

상품/서비스 수령방법을 제안하며, 그 상품/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법인이나 개인

선적물품	개별운송포장상태로 인수해서 하나의 인도지시서에 따라 인도되는 주소가 적힌 교신, 소포, 기타 문서나 비-문서 성격의 내용물
인도지시서	발송인과 수령인의 명칭,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선적물품의 성격과 특징, 선적물품의 발송과 수령일자, 추가서비스와 지불방법에 관한 자료, 고유번호와 바코드에 관한 자료를 기재해서 각 선적물품에 대해 작성된 문서
바코드	기술적 장치, 일련의 흑색과 흰색 띠, 또는 기타 기하학적 형태를 통해 읽혀 지게 만든 선적물품 포장이나 포장라벨 상의 그래픽 정보
현금지불 인도	계약자가 고객을 대신해서 수령인에게서 접수해서 고객에게 발송하는 고객이나 고객이 대리하는 자의 물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자금. 현금지불인도의 금액은 고객이 결정한다.